

VIP korea 가정방문요양센터 성남점

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

(방문목욕)

이용자, 서비스 제공자 및 대리인(보호자)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2조(계약기간)

- 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(보호자)은 계약기간을 정한다.
-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제3조(급여범위)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.

제4조(급여이용 및 제공)

- ①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(제공)계획서에 의한다.
- ②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을 정한다. 다만, 방문목욕급여는 주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·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.
- ③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때에 반드시 2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.
- ④ 서비스 제공자는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(보호자)과 협의하여 당월 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.

제5조(계약자 의무)

-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- 1. 월 이용료 납부의무
 - 2. 방문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
 - 3.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
 - 3. 기타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
- ②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- 1. 방문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
 - 2. 서비스 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대리인(보호자)에게 통보
 - 3.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
 - 4.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(단,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)
 - 5.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
 - 6. 이용상담,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
 - 7.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
 - 8. 기타 이용자 또는 대리인(보호자)의 요청에 협조
- ③ 대리인(보호자)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- 1.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 - 2.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
 - 3.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
 - 4.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
 - 5. 기타 서비스 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

제6조(계약해지 요건)

- ① 이용자 또는 대리인(보호자)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 - 2. 제3조의 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급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 - 3. 제4조제2항의 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대리인(보호자)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

4.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(보호자)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 2.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 3.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 4.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 5.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 6.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
제7조(계약의 해지)

- ① 이용자 또는 대리인(보호자)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.
- ② 서비스 제공자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대리인(보호자)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

제8조(이용료 납부)

- ① 방문목욕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- ② 서비스 제공자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이용자 또는 대리인(보호자)에게 7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.
- ③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기관계좌로 10일까지 납부한다. 다만,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.
- ④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.

제9조(재계약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.

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
2.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
3.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
4. 기타 이용자 또는 대리인(보호자)이 필요한 경우

제10조(건강관리)

- 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(보호자)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서비스 제공자는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급여 제공 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11조(위급 시 조치)

- ① 서비스 제공자는 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(보호자)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대리인(보호자)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대리인(보호자)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대리인(보호자)에게 통보한다.

제12조(개인정보 보호의무)

-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②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- ③ 서비스 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- ④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- ⑤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제13조(기록 및 공개)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

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이용자 또는 대리인(보호자)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4조(배상책임)

- ①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(보호자)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.
 1. 장기요양요원(또는 서비스 제공자)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2. 장기요양요원(또는 서비스 제공자)의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)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(보호자)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 1.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
 2. 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 3.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 4.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제15조(기타)

-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.
-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 또는 대리인(보호자)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.

[별표 1]

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(2026.01.01)

○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분 류	금액(원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내 목욕)	88,990원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내 목욕)	80,230원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50,100원

-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,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%를 산정한다.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2,512,900원	2,331,200원	1,528,200원	1,409,700원	1,208,900원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의료수급권자 6.0% 차상위 6.0% 차상위 9.0%

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
성 명 : (주민등록번호 :)

주 소 :

1. 수집대상정보

-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
-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
-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한 정보
-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

2. 수집정보의 활용범위

-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
-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
-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
- 장기요양계획, 욕구조사,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

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이 용 자 : (인)